

의안번호	2126057
의 퇴 인	김영식의원
회 답 일	2024.1.11.
추 계 번호	23E51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하고, 적용기한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할 경우, 재정 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- 재정수입 감소는 2025~2026년 2년간 총 2,309억원(연평균 1,154억원)으로 예상
 -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수, 임대료 인하액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 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향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누적	연평균
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(안 제96조의3㉠)	-1,154	-1,154	-2,309	-1,15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96조의3제1항 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 정 및 일몰기한 연장 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%(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 과 시 50%)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- (개정안)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 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80%(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%)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6조의3제1항 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하는 법률안은 2023년 12월 21일 본회에서 의결, 개정안의 발의일('23.12.22.)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개정안의 발의일 기준으로 세수효과 추계
 -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시행('24.1.1.)되기 전에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, 발의일을 기준으로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행하며,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 -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5년에 발생하므로 2025년부터 2년간의 세수효과 추계(징수 기준)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의 조세지출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2022년(귀속기준)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수, 임대료 인하액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세액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조세지출 실적

-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2년 1,970억원이었으며, 2023년은 1,010억원으로 전망
 - 2023년 잠정치는 2023년 상반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실적(2022년 귀속 기준)을 반영한 잠정치
 - 2020년 동 제도 신설(세액공제율 50%)
 - 2021년 소득분부터 세액공제율 상향(50% → 70%, 단,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%)

[표 4]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0년 (실적)	2021년 (실적)	2022년 (실적)	2023년 ¹⁾ (잠정)
소득세	0	1,448	1,597	804
법인세	2.0	225	373	207
계	2.0	1,672	1,970	1,010

주: 1) 2022년 귀속 기준

자료: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2023년 조세지출액(2022년 귀속)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2023년 조세지출 잠정치(2022년 귀속)는 2023년 상반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실적(2022년 귀속 기준)을 반영한 전망치이므로 추계에 활용
 - 2022년(귀속기준)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수, 임대료 인하액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, 2023년(2022년 귀속) 조세지출액 잠정치를 기준으로 공제율 인상률만큼 조세지출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
(2) 추계 결과

-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하고, 적용기한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5~2026년 2년간 총 2,309억원 감소 예상
 -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수, 임대료 인하액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향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누적	연평균
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(안 제96조의3①)	-1,154	-1,154	-2,309	-1,15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